

노동단체카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 카드 구분	㉗ 설립 ㉘ 변경 ㉙ 해산	② 관할 행정관청			
③ 명칭		④ 전체 근로자 수	총: 명 (여: 명)	⑤ 조합원 수	총: 명 (여: 명)
⑥ 주된 사무소 소재지				⑦ 전화번호	
⑧ 설립일	20	⑨ 기업 또는 사업장명	⑩ 산업 종류 코드 번호	⑪ 소속 연합 단체 약칭, 코드번호	
⑫ 조직형태	㉗ 조직 단위 ㉘ 기업 ㉙ 사업장 ㉚ 특정지역 ㉛ 전국 ㉜ 조합 형태 ㉝ 단위노조 ㉞ 지부 ㉟ 분회 ㊱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㊲ 연합단체 ㊳ 총연합단체				
⑬ 습제도	㉔ 오픈 습 ㉕ 유니온 습 ㉖ 클로즈드 습	⑭ 대표자 임기	⑮ 대의원 수	⑯ 조합비 징수기준	
⑰ 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	㉗ 총회: 월 ㉘ 대의원회: 월	⑱ 해산일 20	⑲ 해산 사유	㉙ 결의 ㉚ 합병 ㉛ 분할 ㉜ 노동위원회 의결(휴면노조) ㉝ 폐업 ㉞ 조합원 수 ㉟ 기타	
⑳ 단체협약 유효기간	20 ~ 20	㉑ 임금협약 유효기간		20 ~ 20	
㉒ 단체협약 교섭방식	㉓ 기업별 ㉔ 통일 ㉕ 대각선 ㉖ 공동	㉗ 임금협약 교섭방식		㉘ 기업별 ㉙ 통일 ㉚ 대각선 ㉛ 공동	
㉜ 근로시간 면제자 수	합계 명 (풀타임 명, 파트타임 명)	㉝ 근로시간면제자 월 평균 보수			천원

㉞ 임원 현황

직책	성명	주민등록번호	선출기관	임기 (개시일~만료일)	근속연수	임원 재임연수

㉟ 산하지부 또는 분회 현황

명칭	소재지	대표자	전화번호	근로자 수			조합원 수		
				계	남	여	계	남	여

작성방법

- ②: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(고용노동부 본부, 지방고용노동관서, 시·도, 시·군·구)을 적습니다.
- ③: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(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적습니다).
- ④: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.
- ⑨: 기업별(사업장별)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⑩: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조직대상 사업장의 주된 산업 종류를 적습니다.
- ⑪: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.
- ⑩: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.
- ⑫·⑬:
 - ㉞기업별: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와 그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.
 - ㉟통일교섭: 전국적(지역적) 규모의 산업별(직종별)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㊱대각선교섭: 전국 단위의 산업별(직종별)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- ㊲공동교섭: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- ⑭: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적습니다.
- ⑮: 선출기관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.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.
 - 1. 총회 2. 대의원회
- ⑯: 산하지부 또는 분회 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.